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642호
- 나. 제 안 자 : 서울특별시장
- 다. 제안일자 : 2025년 3월 31일
- 라. 회부일자 : 2025년 4월 2일

2. 제안이유

- 장기복무 복무군인을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람료 면제 대상에 추가하여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고 우대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관람료 면제 대상으로 장기복무 제대군인 추가(안 제9조제1항제18호 신설)
- 나. 문구 정비 등 기타 경미한 사항 수정(안 제9조제1항제11호 등)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강옥심)

가.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장기간 국가를 위해 명예로운 헌신을 일군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서울특별시립미술관 무료 관람 대상으로 명시하여, 서울특별시 차원에서 병역에 대한 존중과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에 의해 제안되었음.

나.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미술관 무료 관람 필요성

-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헌법」 제39조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으며, 병역과 관련한 관계법령인 「군인사법」에 현역으로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準士官), 부사관(副士官)의 복무 구분과 의무복무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병(兵)의 경우 「병역법」에 따라 복무기간이 정해져 있음.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복무기간에 따라 제대군인을 구분¹⁾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분을 바탕으로 취업 및 창업지원과 교육·의료·대부 지원을 다르게 실시하고 있음.

1)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
·중기복무 제대군인: 5년 이상 10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
·의무복무 제대군인: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미만의 기간을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

< 제대군인별 지원제도 구분 >

1. 의무복무 제대군인(5년미만) 지원제도

- 군복무기간에 따라 채용시험 응시 상한연령 연장, 군경력을 근무경력으로 인정(일부), 전·공상 제대군인에 대하여 무료진료

2. 중기복무 제대군인(5~9년) 지원제도

- 전문화된 직업능력개발 교육프로그램 지원, 제대군인지원센터의 맞춤형 전직지원 서비스

3. 장기복무 제대군인(10년이상) 지원제도

가. 취업보호

- 공기업·기업체 등에 특별채용(일부 대상자에 한정)

나. 교육지원

- 대학 입학금 및 수업료의 50%가 감면(전역 3년 이내에만 한정)

다. 의료지원

- 보훈병원 이용시 본인부담액의 50%를 감면

라. 대부지원

- 주택구입, 임차, 사업자금, 농토구입, 생활안정, 학자금 등의 마련을 위해 대부지원

마. 주택분양

- 국토해양부는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에 대한 공공주택 우선분양

바. 공공시설의 이용

- 고궁 및 공원 등 공공시설 이용 시 감면(전쟁기념관의 경우는 무료이며, 독립기념관은 65%, 국립민속박물관과 고궁 및 능원은 50%를 감면)

사. 안장지원

- 국립호국원 안장의 경우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의 경우는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 현재 정부는 ‘광복 80주년 보훈으로 하나된 대한민국’이라는 정책 방향 아래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제복근무자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예우를 추진하고 있는바,

동 개정조례안을 통해 오늘의 영웅인 제대군인 중, 10년 이상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존중과 예우를 도모할 수 있으므로 동 개정안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됨.

- 또한 정부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2)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해서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감면을 시행하고 있고, 각 자치단체에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 2024년 기준 세종특별자치시와 강원특별자치도는 공립 박물관과 문화촌에 대해 관람료 면제를 시행하고 있기에 서울시 역시 시립시설에 대한 무료 관람에 대해서도 시장의 자치사무로서 정책적 판단에 따라 감면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광역자치단체 중 공공시설에 대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이용료 면제 조례 현황 >

기준: 24.1.10.

광역시·도명	지원분야	조례명	지원대상	주요내용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장기복무 제대군인	관람료 면제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시설	강원특별자치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	장기복무 제대군인	관람료 면제
	공공시설	강원특별자치도 탄광문화촌 관리운영 조례	장기복무 제대군인	입장료 할인

- 다만 동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미술관 관람료 전액 감면 규정에 따라 세입 감소액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미술관의 무료 관람 대상자에 대한 통계를 따로 보유하고 있지 않아 비용을 추계하지 못하였음.

따라서 정확한 세수 추계를 위해 서울시립미술관은 향후 관람객에게 관람료를 징수하는 특별전 진행 시, 무료 관람 대상자에 대한 통계를 마련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제23조(공공시설의 이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무료 관람 시행(안 제9조제1항제18호)

< 관련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9조(무료 관람) ① 시장은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람료 징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관람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1. ~ 10. (생략)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2. ~ 17. (생략) <u><신설></u> 18.·19. (생략) ② (생략)	제9조(무료 관람) ① ----- ----- ----- ----- 1. ~ 10. (현행과 같음)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12. ~ 17. (현행과 같음) 1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19.·20. (현행 제18호 및 제19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사용기간) ① 대관자가 미술관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10월) : 09:00부터 20:00까지 2. 동절기(11월~다음해 2월) : 09:00부터 19:00까지 ②·③ (생략)	제12조(사용기간) ① ----- ----- 1. ----(3월~10월): ----- 2. ----- 2월): ----- ---- ②·③ (현행과 같음)

- 동 개정안은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서울특별시립미술관의 무료 관람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을 위해 시립미술관을 설립 및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나목에는 미술관 설치 및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지방자치법」 제156조 따라 사용료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바, 사용료 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할 때 조례로 사용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음.(법제처 2016. 9. 22. 의견제시 16-0260).
- 아울러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에 대한 이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는 조례를 입안하는데 있어 관계 법령과 충돌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법령상의 위임 및 자치사무로서의 권한으로 시장이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무료 관람 대상으로 명시한 개정안은 특별한 법제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2) 띄어쓰기 등 자구 수정(안 제9조 및 제12조)

- 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제9조와 제17조에 있어,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의 변경 사항 반영 및 띄어쓰기 등 어문 규정에 어긋난 부분을 수정하고 있음.
- 법제처가 발간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은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하는 것을 바탕으로 반듯한 법령을 만들기 위해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및 <외래어 표기법> 등 어문 규정에 맞게 입안하도록 제안하고 있는바, 조례안 입안 시 본문의 내용이 관련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시 법무담당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향후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